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2
----------	------

제출년월일 : 2010. 8. / 6.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중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 규 조문 개정.

주요골자

- 가. 「수도법」 제3조(정의)의 용어 변경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함 (안 제2조)
- 나. 「수도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조문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변경함 (안 제1조, 제5조)

개정 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0. 5. 3. ~ 5.22.(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사용자협의회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협의회”란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전·개수·보수 및 소독 등 일체를 관장한다.

제5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2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 규칙」 제25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한다.

제11조 중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안산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을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5명 내외”를 “5명 이내”로 하고 제3항 중 “(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2항 중 “협의회를” 앞에 “대표자는”을 삽입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의 유지·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民間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중 내용문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2호 중 “안산시상수도사업소”를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1. 이곳은 「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당해지역의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사용자협의회"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p>제1조(목적)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p>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사용자협의회 대표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 "사용자협의회"란 사용자들로 .
<p>제3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운전·개수·보수 및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상수원관리 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설의 관리) ①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전·개수·보수 및 소독 등 일체를 관장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수질검사) ①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 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p> <p>②</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수량고갈, 시설의 이용저조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u>간이상수도 시설개량</u>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시설의 폐지) ① -----</p> <p>-----</p> <p>-----</p> <p>-----</p> <p>-----</p> <p>-----</p> <p>----- 마을상수도 -----</p> <p>-----</p>
<p>제11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건강진단) -----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p> <p>-----</p> <p>-----</p> <p>-----</p> <p>-----</p>
<p>제12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u>간이상수도</u>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u>안산시수도급수조례</u>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제12조(요금징수) ① ----- 마을상수도 -----</p> <p>-----</p>
<p>제15조(사용자협의회) 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p> <p>③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⑤ (생략)</p>	<p>제15조(사용자협의회) ①(현행과 같음)</p> <p>② ----- 5명 이내 -----</p> <p>-----</p>
<p>제17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p> <p>② <삽 입>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7조(협의회의 개최) ① -----</p> <p>각 호의 어느 하나 -----</p> <p>-----</p>
<p>제20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u>간이상수도</u>의 유지·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0조(관리의 위탁) ① ----- 마을상수도 -----</p> <p>-----</p>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4조제1항 관련)

○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시
연락처 : 안산시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전화 : ()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4조제1항 관련)

○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른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시
연락처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전화 : ()